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3.23.)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미영]

목 차

1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3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15
4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3
5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34
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7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8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6
9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63
1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11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1)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수 30개 이상 밀집 구역
 -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 나.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정함(안 제3조)
 - 1)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
-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정함(안 제4조)
- 라. 골목형상점가 취소를 정함(안 제5조)
- 마.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권장,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2. 7. ~ 2.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양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0.2.11.)으로 기존 점포 밀집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이 없었던 상가 밀집구역에 대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내 골목형상점가 조건에 맞는 대상구역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13.(생략)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

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을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⑨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 6.~9. (생략)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⑥ (생략)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시외버스 이용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유료화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된 용어로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항)
 - 1) 노상주차장 및 직영노외주차장 ⇒ 공영주차장
 - 2) “공영주차장”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현행 제2조제1호)
-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제9조제3항)
 - 1) 공익목적의 사유: 교통의 원활한 소통,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 2) 감면율 : 면제 또는 100분의 50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1. 28. ~ 2. 1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양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에 조성된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이용률 저조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률 증가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9조제3항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이 주요내용으로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 또는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와 터미널 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12-0366

1. 질의요지

-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제9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나. 구민대상 문화교육 목적의 시설물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서 여성 대상 강좌를 운영할 경우, 해당 강좌 수강생에게 그 장소와 물리적으로 접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다.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이나 고시, 나아가 법규형식이 아닌 구청장 방침과 같은 내부결재문서로 감면 대상 및 감면을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검토의견

가.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은 주차장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인 사회적 약자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나 이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들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보이고, 그러한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문화원과 물리적으로 접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바, 감면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조례에 둘 필요는 없고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서는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제5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그 감면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②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③자가용 부제 참여차량, ④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성실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하여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입법기술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감면대상을 모두 조례에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러한 사회적 약자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에 따라 그러한 감면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판단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들어 구청장에게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대한 고려없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임의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차장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사용료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특혜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사회단체 회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과 주차장조례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장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8호의 사회적 약자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나 이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들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

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특정 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차장조례 제5조제4호나목 등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니 조례 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와 관련하여, 계양구청에서는 구청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의 수강생이 청사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훈령 제4조제3호에 따라 1시간 이내의 민원인으로 보아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구민대상 문화교육 목적의 시설물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여성 대상 강좌 수강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지 않고 있어, 수강생간 형평성 차원에서 강좌 운영 장소와 물리적으로 접해있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문화원에서 구민대상 문화교육 목적으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강좌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청장이 지방문화원 강좌 수강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인정하였다면 지방문화원과 물리적으로 접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바, 감면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조례에 둘 필요는 없고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4조)
 -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 2)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
- 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정함(안 제5조)
- 마. 자발적 협약 체결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사.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1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7. ~ 2. 2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8에서 위임되었으며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관련 사항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발굴 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한 및 제한시 대체 비용지원 가능, 안 제6조 ~ 제7조는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행·재정 지원, 이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 제9조는 우수업소 선정 및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 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품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7. 3. 16.] [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회용 컵·접시·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옷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3.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수저·포크·ナイ프를 말한다.
4. "1회용비닐식탁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1회용 치약·삼푸·린스"란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

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9. "1회용 쇼핑백"이란 손잡이가 부착되어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손잡이를 포함한다)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10. "1회용 응원용품"이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업종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도·소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시·구·군 조례에 따라 매장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말한다.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금속박 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폼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2.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3.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손잡

이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 도·소매업: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경상남도에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제6조)
- 다.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7조)
- 라.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정함(안 제8조)
- 마.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를 정함(안 제9조)
- 바.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 재정법」 제17조, 「자원순환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15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7. ~ 2.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 요청(2022.1.18.)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 ~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안 제8조는 자원순환 활성화사업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의 2021년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4.9톤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이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달음식시장 성장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원순환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1식
- 나. 관련 조문: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2023년도
지원액	15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국비·군비 매칭비율=1: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3년도 필요 총예산 300백만원 중 군비 150백만원
2. 세척전용 건물 신축: 100백만원
 - 가. 설계비: 10백만원
 - 나. 공사비: 90백만원
3. 세척시설 설치 및 용기 구입: 50백만원
 - 가. 식기세척기, 살균기 구입비: 12.5백만원
 - 나. 실내공사비: 25백만원
 - 다. 다회용기 구입비: 12.5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신종호

●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시·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다.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방법을 정함(안 제2조)
- 나.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및 감사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다.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편성·운영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감사실시 통보,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를 정함(안 제6조~제8조)
- 마. 감사반의 유의사항,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1. 17. ~ 2. 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안 제3조 ~ 제7조는 감사 실시여부 결정,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실시 통보,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감사 종료 후 결과 처리 및 관리주체 등의 감사 조치사항 이행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들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사결과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타법개정]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시행 2010. 12. 17.] [감사원규칙 제222호, 2010. 12. 17., 제정]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 「공공감사기준」

[시행 1999. 8. 28.]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 8. 28., 제정]

제10조(감사자세) ①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거리 산출기준을 법령위임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4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2. 15. ~ 3. 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 개정 (2021.11.2.)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거리 산정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41조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관련해 조례로 위임한 거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제2항~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거리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

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 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

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 법제처 정부합동평가대상 필수조례

법령	조문	위임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

제86조(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③. 2.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부칙

제5조(공동주택의채광확보거리에관한경과조치)①지방자치단체는이영시행일부터6개월이되는날까지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개정규정에따라건축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리기준(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의 하한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정함(안 제4조~제9조)
- 라. 가공시설 이용, 이용료, 이용료 반환, 이용제한을 정함(안 제10조 ~ 제13조)
- 마.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신설(안 제14조)
- 바. 법령 및 조례 재기개 등 삭제(현행 제3조·제8조·제9조·제16조 ~ 제18조)
 - 1) 정의, 실비변상, 관리운영, 위탁기간, 준용, 시행규칙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185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2. 15. ~ 3. 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 안 제14조는 가공센터 사용허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사용·수익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따라 사용허가 방법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비용추계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용
- 나. 관련조문 : 제3조(시설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합계
군비	185	185	185	185	185	925

3. 관련 의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 가. 2022년도 예산 185백만원
- 나.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 관련 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산가공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7.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적정한 가공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가공물량, 공공요금,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
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거창사과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에 거창사과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거창사과 융복합센터를 설치하여 거창사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제4조)
- 나. 융복합센터 체험료 등을 정함(안 제5조)
- 다.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6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825백만원 반영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2. 15. ~ 3. 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거창사과 용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거창사과 용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용복합센터를 지역경제의 다각화·고도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는 거창사과 용복합센터의 기능을, 안 제6조~제12조는 거창사과 용복합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해촉, 회의 개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창사과 및 가공식품의 유통·판매·홍보, 체험 및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복합센터는 거창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따른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나. 관련조문

(1)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

(2) 제4조(운영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합계
군비	350	825	50	50	50	1,325

국비·도비·군비 매칭비율 = 50:7:43

3. 관련 의견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으로 융복합산업화 촉진 및 지역 경제의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융복합센터 건축 및 시설비용: 1,175백만원
2. 운영비용 보조: 매년 50백만원 정도 소요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 관련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 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 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의견13-0283)

1. 질의요지

보성군 소유 재산·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액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2. 이유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법규 형식인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성군 소유 재산·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12-0095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요금징수시설과 사용료 금액에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조례에서 요금징수시설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부과 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도 요금징수시설 및 사용료 금액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 금액을 반드시 조례에서 확정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수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안 별표 1)
 - 2)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안 별표 2)
- 다. 긴급한 재해복구 등 필요시 면제를 정함(안 제4조)
- 라. 부과·징수를 정함(안 제5조)
- 마. 다수의 원인자를 정함(안 제6조)
- 바. 과오납금 반환 등을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2. 11. ~ 3. 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참고조례안 입법컨설팅 반영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산출 세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과징수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6조 및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안 제2조 원인제공자 부담금과 안 제3조 파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각각 납부주체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준도 각각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외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임

- 공정한 요금부담으로 신뢰를 향상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

- 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숙소,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1호, 2021. 3. 30., 일부개정]

-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824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21. 6. 15.>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3.~42. (생략)
43.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44.~78. (생략)
79.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80.~95. (생략)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11-0192

1. 질의요지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이유

「수도법」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위 규정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비용의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주민

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6조(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46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6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6]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46조 관련)

항 목	산 출 기 초
◦수돗물 손실액 및 세척비용	◦ 수량 × 톤당단가 × 200%
◦원상복구비	◦ 설계금액
◦급수차량 사용경비	◦ 운반수량 × 톤당단가 × 200% + 차량임대료
◦동원차량 및 기타 경비	◦ 차량, 중기의 임대료 + 동원인력 출장비 + 기타경비
◦공사 설계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

수압별 누수량 조건표

수압(kg/cm ²)	0.2	0.4	0.6	0.8	1.0	1.2
누수량(m ³ /hr)	1.43×A	2.02×A	2.48×A	2.86×A	3.20×A	3.51×A
수압(kg/cm ²)	1.4	1.6	1.8	2.0	2.2	2.4
누수량(m ³ /hr)	3.79m ³ ×A	4.05×A	4.29×A	4.53×A	4.75×A	4.96×A
수압(kg/cm ²)	2.6	2.8	3.0	3.2	3.4	3.6
누수량(m ³ /hr)	5.16×A	5.36×A	5.54×A	5.72×A	5.90×A	6.07×A
수압(kg/cm ²)	3.8	4.0	4.2	4.4	4.6	4.8
누수량(m ³ /hr)	6.24×A	6.40×A	6.56×A	6.71×A	6.86×A	7.01×A
수압(kg/cm ²)	5.0	6.0	7.0	8.0	9.0	10.0
누수량(m ³ /hr)	7.16×A	7.84×A	8.47×A	9.05×A	9.60×A	10.12×A

※ 산출근거 : $Q = 3.2 \times A \times \sqrt{P}$

(Q : 시간당 누수량(m³/hr), A : 누수부위 면적 (cm²), P : 수압 (kg/cm²)

예) 폭 1mm, 길이 5cm가 파열되고 수압이 3.6kg/cm²이라면

누수부위 면적 $A = 0.1 \times 5 = 0.5\text{cm}^2$

시간당 누수량 $Q = 6.07 \times 0.5 = 3.035(\text{m}^3/\text{hr})$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고 및 산정 방법 개선,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개선(안 제20조제1항제4호)
 - 1) 현행 :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 2) 변경 :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4항)
 - 1) 현행 : 건축 인·허가 시 부과
 - 2) 변경 : 건축 인·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 산정 부과

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5)

1)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

2) 산술평균 ⇒ 기하평균(물가상승에 적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16. ~ 3.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환경부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환경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0조제1항제4호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맞게 개선하고, 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4항은 건축물 인·허가 시 부과하던 것을 인·허가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부과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별표5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개선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안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 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임
- 환경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

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7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 [시행일: 2022. 7. 12.] 제14조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3. 11.

나. 발 의 자 :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최정환 · 김종두 · 심재수 · 권재경 · 이재운 · 김향란 ·
표주숙 · 이흥희 · 신재화 · 권순모 · 박수자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3. 14.

2. 개정이유

거창사건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는 희생자가 2인 이상인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 유족의 상처 치유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사건 희생자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생활보조비를 정함
(안 제3조)

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을 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7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5. ~ 3. 2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사건 희생자보다 유족 인원이 많은 경우 일부 유족이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족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 희생자에 대한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근거와 유족이 다수인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유족간 형평성 및 유사사건의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결로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비용추계서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희생자 2인이상의 경우 유족 생활보조비 편성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희생자 1인당 유족에게 생활보조금 지급시 연 9,600만원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합계	105	110	115	120	120	570
세출	105	110	115	120	120	570

※ 조례개정이후 추가 유족등록 인원 증가 예상 : 연 900만원

3. 부대의견

○ 2인이상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생활보조비 편성 필요

○ 다수의 유가족의 경우 동등한 지원을 위하여 편성 필요

4. 협의사항 :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 편성은 매년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재원조달 방안 : 군비 확보, 이후 부족예산 추경편성예정

2.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합계	105	110	115	120	570
	군 비	105	110	115	120	570

작성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 관련 법령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도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7조(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等關聯者의名譽回復에 관한特別措置法の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